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건 2023고정111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사 김재성(기소), 왕은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변주은(국선)

판결선고 2023. 9.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9. 1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년부터 B 종친회의 감사와 부회장으로 재직하다가 2017. 1. 26.경부터 2020. 2. 23.경까지 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종친회 감사와 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종친회 재산인 인천시 소재 상가에 대한 임대 수익과 종중의 각종 행사에 따른 지출 등 종중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전(前) 회장 C 명의 D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전반적인 종중 자금을 관리하였다.

- 1. 피고인은 종친회 수익인 인천시 소재 'E빌딩' 월 수익금을 관리하는 C 명의 D은행 계좌를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9. 23. 15:10경 위 D은행 계좌에서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고, 이를 같은 날 15:16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한 후, 같은 날 15:23경 그 중 398만 원을 평택시 G 소재 임야 지분을 피고인과 처 H 공동명의로 취득하는데 필요한 계약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I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하고, 나머지 102만 원은 부친 요양비 등 생활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 2. 피고인은 2016. 9. 9.경 07:24경 종중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기업은 행 계좌에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 3. 피고인은 2016. 9. 9.경 평택시 J 임야 21,927㎡ 중 21,927분의 239.5 지분을 아들 K 외 1명 명의로 매입하면서 잔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위 D은행 계좌에서 수표 2,000만 원 1장, 현금 700만 원 등 합계 2,7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700만 원은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중도금 16,953,000원을 지급하는 데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2016. 9. 23.경 2,000만 원은 주식회사 I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입금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 종친회 종중 소유 자금 총 3,7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1.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 1. 고소장
- 1. A 계좌거래내역 사본 등, A 계좌거래내역, C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자기앞수표 지급내역 등, 부동산내역, 계좌거래명세표, 대출금원장조회
-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 종중의 임원으로 일하면서 쌓은 종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피해자 종중 소유의 금원 3,7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을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일해 왔고, 국가유공자이기도 하다.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등의 상태에 있는 피고인이 현재 파킨슨병, 치매 등의 질병을 앓고 있어 인지능력이 급격히 저하되었고, 피고인의 처 또한하지 관절 장애 등을 가지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배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최해일